

전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 회칙

2017년 12월 11일

(전 문)

진리·평화·자유의 건학 이념에 입각한 전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올바른 대학문화를 창조함은 물론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구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자치기구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기구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모든 회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리탐구와 대학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 본 기구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자격) 본 기구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정학상태에 있는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1. 본 기구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기구의 회원은 본 기구의 사업계획, 본 기구의 개정, 그 밖의 본 기구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고, 본 기구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본 기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조직) 본 기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본 기구 특별자치기구로 도서관자치위원회, JJ축구리그위원회, 백마응원단으로 조직한다.

제2장 학생총회

제7조(지위) 학생총회는 본 기구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8조(구성) 학생총회는 제4조의 자격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9조(권리)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칙의 전면 개정 및 폐지의 의결권(회칙개정은 전학대회 요구 후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에서 결정한다. 다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질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개정 의결 할 수 있다)
2. 총학생회 정·부회장 탄핵 및 파면권

3. 본 기구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및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의 심의·의결

제10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총학생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총학생회 정·부회장 탄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운영위원 대표 1인이 의장이 된다.

제11조(총회) ①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학생총투표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한다. 다만, 총회를 열 수 없을 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진행한다.
2. 임시총회는 본 기구의 의장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일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 가.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 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 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학생총회의 소집은 소집이유를 명시하고,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즉시 소집 할 수 있다.
4. 학생총회가 열릴 때 학교 당국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5. 학생총회가 열리는 시간은 학교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결처리 한다.

② 학생총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총회는 재적회원의 1/10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학생회 정·부회장 탄핵안건은 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기권은 의결에서 제외한다.
3. 의결할 때는 출석회원 1/2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4. 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탄핵안건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③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같은 권한을 가지며,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2. 학생총투표는 본 기구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투표로 성립되며, 유효 투표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대한 탄핵투표 또한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유효 투표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학생총투표 실시와 투표안건은 7일 이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전에 투표실시와 안건을 공고할 수 있다.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2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는 학생총회 다음의 의결기구로서 본교의 중대사, 회원의 관심사 등을 주요안건으로 상정, 결정, 집행한다.

제13조(구성)

1.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 정·부회장, 학과 학회장·부학회장, 중앙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장, JJ축구리그위원회 위원장, 백마응원단 단장으로 구성된다. 위 모든 정·부회장, 위원장들은 직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중앙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은 간선으로 선출한다.
2. 제1항에 해당되는 정·부회장,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기타의 이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학생회는 발인 및 의결권을 가지는 대표(해당전공 2학기 이상을 다닌 학생)를 위임하여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배부한 양식으로 한다.

제14조(의장)

1.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책임을 승계하며, 부총학생회장 또한 궐위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학생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
2. 의장은 전학대회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전학대회를 대표한다.

제15조(업무 및 권한)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본 기구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심의·의결한다
2. 총학생회의 총 노선을 심의·의결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다
4. 제6조 조직에 대한 감사
5. 제6조 조직에 대한 선거
6. 총학생회 국장, 특별자치기구장의 출석 및 답변요구
7. 학생총회 소집, 학생총투표 시행 요구권
8. 특별자치기구 신설에 대한 의결권 및 특별자치기구장 인준권
9. 회칙개정 요구권
10.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자치기구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자치기구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1. 전학대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의장의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이를 위임할 수 있으며, 탄핵안건은 제외한다.
12. 학생자치기구장 탄핵발의권.(다만, 단과대학 정·부회장인 경우에는 각 단과대학의 총회 및 학생투표로 탄핵을 의결한다.
13.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 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 발의 후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로 의결하며, 탄핵 발의 후 총학생회장은 그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운영위원회 1인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제16조(회의)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로 개강 후 5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고, 7일 이전에 공고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 가. 총학생회장이 긴급발의 한 경우

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가 있는 경우

다. 전학대회 구성인 1/4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

② 전학대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학대회의 모든 안건은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기권은 의결에서 제외한다.
2. 의결 할 때에는 출석위원 1/2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7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라 한다)는 본 기구의 상시적 의결기구로서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8조(구성) 중운위는 총학생회의 정·부회장 및 기획실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학생회 기획실장은 회의의 서기 역할을 담당하며, 참조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19조(위원장)

1. 중운위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대행하며, 부총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중운위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중운위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중운위를 대표한다.

제20조(업무 및 권한)

1. 본 기구의 회비 및 예산편성을 심의·의결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2. 본 기구의 전반적인 업무 진행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3. 총학생회 국장과 특별자치기구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업 진행에 관한 보고와 논의를 할 수 있다.
4.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학대회 및 학생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5. 학교 당국과 등록금을 협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선발한다(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운위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중앙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중앙감사위원장이 선출한 4명의 위원을 심의·의결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인을 추천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8. 기타 중운위의 의결을 요하는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21조(회의) ① 중운위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중운위에서 결정하여 소집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결은 중운위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총학생회

제22조(지위) ① 총학생회는 본교와 1만 2천 학우를 대표하는 최고학생자치기구이며, 집행기구이다.

② 총학생회 정·부회장은 본교를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장이다.

제23조(구성) ①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임명한 기획실장, 각 국장 및 차장,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학생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부총학생회장 또한 궐위된 때에는 중운위에서 선출된 1인이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은 후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일 까지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③ 탄핵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전학대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 안건으로 상정한다.
2. 탄핵안은 학생총회나 학생총투표에서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학생총회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의 실시여부는 전학대회에서 결정하며, 학생총투표의 관리는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거쳐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운위에서 선출된 자가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4항제1호에 준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일 까지 한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장은 본교 학생자치기구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의장, 전학대회 의장, 중운위 위원장, 총학생회 회장이 된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한다.
3.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운위, 총학생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4. 특별자치기구 신설 및 폐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전학대회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5. 특별자치기구 및 총학생회 국·차장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
6. 부서의 신설 또는 폐지는 필요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정한다.
7.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총학생회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운위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총학생회 일체의 사업계획 보고서를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3. 총학생회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가. 기획국 : 총학생회 제반사업의 기획을 담당한다.

나. 교육복지국 : 교내 복지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수업환경, 교내 시설환경 등).

- 다. 생활복지국 : 교외 복지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통학, 기숙사, 자취생 등).
- 라. 대외협력국 : 총학생회 및 학생활동의 외부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 마. 문화·체육국 : 교내·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바. 사무국 : 총학생회 및 학생활동의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
- 사. 재무국 : 총학생회 회계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아. 정책국 : 총학생회 정책, 공약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자. 홍보국 : 총학생회 활동에 관한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25조(재정)

1. 총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교비, 기타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한다.
2. 총학생회는 학생회비와 행사 진행 시 학생들이 행사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6장 특별자치기구

제1절 도서관자치위원회

제26조(지위) 도서관자치위원회는 본교 중앙도서관 자치기구이며,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둔다.

제27조(구성)

1. 도서관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부로 구성된다.
2. 도서관자치위원장은 도서관자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8조(위원장)

1. 도서관자치위원장은 도서관자치위원들 간의 간접선거로 선출하며 이를 중운위에 통보한다.
2. 도서관자치위원장은 도서관자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9조(업무 및 권한)

1. 도서관자치위원회는 도서관의 원활하게 운영하며, 도서관 내 제반활동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2. 본 기구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3. 예·결산과 활동내역에 대해 중운위에 보고를 하고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다음의 양식을 제출하여 매년 상반기 중운위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가. 전년도 결산안, 당해 연도 예산안
 - 나. 전년도 활동보고서
 - 다. 회원명부와 회칙

제30조(재정)

1. 재정은 학생회비 공동예산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4호를 준수 후 책정한다.
2. 학생회비 공동예산 사용에 대하여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2절 JJ축구리그위원회

제31조(지위) JJ축구리그위원회는 본교 축구동아리 리그 운영 자치기구이며,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둔다.

제32조(구성)

1. JJ축구리그위원회는 본교 경기지도학과 축구전공으로 구성한다.
2. JJ축구리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33조(위원장)

1. JJ축구리그위원장은 JJ축구리그위원들 간의 간접선거로 선출하며, 이를 중운위에 통보한다.
2. JJ축구리그위원장은 JJ축구리그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4조(업무 및 권한)

1. JJ축구리그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한다.
2. 본 기구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3. 예·결산과 활동내역에 대해 중운위에 보고를 하고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다음의 양식을 제출하여 매년 상반기 중운위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가. 전년도 결산안, 당해 연도 예산안
 - 나. 전년도 활동보고서
 - 다. 회원명부와 회칙

제35조(재정)

1. 재정은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동아리의 참가비와 교비로 한다.
2. 동아리 참가비에 대하여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3절 백마응원단

제36조(구성) 백마응원단은 본 기구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둔다.

제37조(업무 및 권한)

1. 백마응원단은 교내외 학교행사의 응원업무를 담당한다.
2. 백마응원단은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갖는다.
3. 예·결산과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와 예·결산 심의를 총학생회에 받는다.
4. 다음의 양식을 제출하여 매년 상반기 총학생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가. 전년도 결산안(예산 응원수입 및 지출사항포함), 당해 연도 예산안
 - 나. 전년도 활동보고서
 - 다. 회원명부와 회칙

제38조(재정)

1. 재정은 총학생회 학생회비 예산 및 기타 보조금,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4항을 준수 후 책정한다.
2. 학생회비에 대하여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7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39조(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학우들을 대표하는 단과대학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며, 집행기구이다.

제40조(구성)

1.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학생전체로 구성한다.
2. 단과대학 학생회는 정·부회장,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41조(정·부회장)

1. 단과대학 학생회 정·부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2.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당해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한다.
3.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제42조(업무 및 권한)

1. 단과대학 학생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단과대학 총회 시 사안에 따라 총학생회 정·부회장 및 집행국 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을 시 요구된 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3.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제43조(재정)

1. 단과대학 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학회비,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2. 위 제1호에 대한 재정은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8장 학과 학생회

제44조(지위)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학우들을 대표하는 학과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며, 집행기구이다.

제45조(구성)

1.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학생전체로 구성한다.
2. 학과 학생회는 학회장·부학회장,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46조(학회장·부학회장)

1. 학과 학생회 학회장·부학회장은 학과 학생회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2. 학과 학회장은 당해 학과 학생회를 대표한다.
3. 학과 학회장은 학과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4. 학과 학회장은 소속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47조(업무 및 권한)

1. 학과 학생회는 학과 고유의 업무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2. 학과 총회 시 사안에 따라 단과대학 정·부회장 및 집행부서 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을 시 요구된 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3. 학과 학생회는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제48조(재정)

1. 학과 학생회의 재정은 학회비와 기타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한다.
2. 위 제1호에 대한 재정은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9장 중앙동아리연합회

제49조(지위) 중앙동아리연합회는 본 연합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의 대표기구이다.

제50조(구성)

1. 중앙동아리연합회는 본 연합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동아리연합회 학생회는 정·부회장,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51조(정·부회장)

1. 중앙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은 중앙동아리 회장·부회장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2. 중앙동아리연합회장은 당해 중앙동아리연합회 학생회를 대표한다.
3. 중앙동아리연합회장은 중앙동아리 운영위원회, 중앙동아리연합회 학생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제52조(업무 및 권한)

1. 중앙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기획, 조정, 지원 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중앙동아리연합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가질 수 있다.

제53조(재정)

1. 중앙동아리연합회의 재정은 중앙동아리 신규·재등록비, 총학생회 지원예산, 기타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한다.
2. 위 제1호에 대한 재정은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10장 징 계

제54조(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운위는 전학대회를 통해 해당 기구(총학생회 산하기구, 특별자치기구 등)에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예·결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기구의 활동을 더 이상 유지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본래의 성격과 활동이 심각히 변질되었을 경우(예산 집행, 회칙 위반 등)

제55조(제명)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운위에서는 전학대회에 해당 기구에 대한 제명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고가 2회 연속 누적되었을 경우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경우
3. 심각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제11장 재 정

제56조(재원)

1. 본 기구의 재원은 학생회비, 학회비 및 보조금, 학생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기구의 회비는 전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 중운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7조(회계연도) 본 기구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예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회비) 본 기구의 회비는 매 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학회비로 하며,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인상 시 전 학생회비 인상이 3년 이상 지난 후에 가능하며, 물가상승률, 등록금인상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제59조(예산분배) 본회의 예산분배는 학생지원실과 함께 중운위에서 편성한다.

제60조(추가경정 예산) 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운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1조(예산편성)

1. 예산편성은 학생들이 납입하는 학생회비와 학회비로 편성하며, 중운위에서 의결하여 편성한다.
2. 학생회비 분배율은 총학생회 35%, 각 단과대학 학생회 65%로 하며, 기타 특별자치기구의 예산은 중운위에서 공동예산 명목으로 편성한다. 다만, 중앙동아리연합회의 예산은 총학생회와 논의하여 총학생회 예산의 26~28%로 하며, 조정할 수 있다.
3. 학회비는 단과대학과 학과가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62조(예산집행)

1. 본회의 학생회비 징수, 지출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생지원실에서 담당한다.
2. 본회의 학회비 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생지원실에서 담당하며, 지출에 관한 사무는 단과대학 학생회가 담당한다.
3. 학생회비, 학회비의 인출 및 지출에 대한 모든 서류는 각급 학생회에서 보관한다.
4. 학생회비 예산관리는 학교(학생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지출관련 서류는 의무화로 규정한다.
5. 학회비 예산관리는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담당하고 지출관련 서류는 의무화로 규정한다.

제63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중앙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학대회에서 보고한다.

제12장 감 사

제64조(중앙감사위원회)

1. 중앙감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중앙감사위원장은 매년 1월 중 중운위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3. 중앙감사위원회의 구성은 회계연도의 1월 중에 중앙감사위원장이 구성하며, 감사위원 9인의 선임은 중운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5조(시기)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하반기 1회에 걸쳐 사업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학생들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다.
2. 특별감사는 본 회의 의장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 ①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전학대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중운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④ 본 회의 회원 1/20 이상의 연서로 요구가 있을 경우
3. 감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비(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도서관자치위원회, JJ축구리그위원회, 백마응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감사위원회)
 - ② 학회비(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 ③ 학생회비, 학회비 외의 학생들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도서관자치위원회, JJ축구리그위원회, 백마응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감사위원회)

제66조(임기) 중앙감사위원회의 임기는 본 회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시행)

1. 중앙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중운위에 보고하고 학교 게시판 등 일반학생에게 공표한다.
2. 중앙감사위원회는 자체의 시행세칙을 두고 감사를 진행한다. 다만, 중운위 소속 감사위원은 소속 학생회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68조(징계) 감사 결과 학생회비를 횡령하였거나 사용이 불투명하였을 경우에는 본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3장 선 거

제69조(선거) 본 기구의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간접선거를 할 수 있다.

제70조(선거시기) 본 기구의 선거는 회계 연도까지 완료한다.

제71조(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단과대학 정·부회장, 중앙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선거를 주관하며 업무를 담당한다.

제7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학대회의 의장은 선거 30일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운위에서 선임한 4인과 일반학생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중운위에서 선임한 4인은 전학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학생은 중운위에서 선임한 4인이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다만, 일반학생 1인은 중운위에서 선임한 위원과 단과대학이 중복되는 경우는 불허하며, 1차 공개모집으로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단과대학이 중복될 수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3. 선거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회비 지원, 학교 지원, 후보자의 등록비로 책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등록비는 당해 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한다.

제73조(임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회 및 위원의 임기는 전학대회의 승인을 받은 후부터 선거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제74조(선거권) 선거권은 본 기구의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제75조(피선거권)

1. 본 기구의 회원 중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이수학기가 8학기 미만인 재학생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편입생인 경우, 2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인 사람으로 하며, 중앙동아리연합회 후보자는 한 동아리 안에서 4학기 이상 활동한 재학생인 사람으로 한다.
2. 당해 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2학기 복학생은 당 학기에 준 한다.
3. 각 학생자치기구의 임원인 경우에는 등록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6조(신입투표)

1. 단독후보인 경우 실시한다.
2. 선거시행세칙 제9장제70조제2항에 의거하여 당선된다.

제77조(선거방법)

1.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는 직접선거로 실시한다. 다만, 중앙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선거는 간접투표로 실시한다.
2. 선거일시, 선거운동 규칙, 투표, 당선, 징계 등의 선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78조(보궐선거) 자치기구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학생총회로부터 탄핵을 받을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의 궐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치기구장인 경우에는 자치기구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9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정하며 시행 세칙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14장 회칙 개정

제80조(발의)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장, 전학대회 대의원의 1/4이상, 중운위 위원 1/2이상, 전체회원 1/20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한다.

제81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5일 이내에 의장이 공고하되, 공고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2조(의결)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학생총회에서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학생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전학대회를 통하여 의결한다.

제83조(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와 학생회 사업의 통례에 따른다.

본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총 대의원회에서 담당한다.

본 회칙은 199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회의 회칙은 199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96년 총대의원회 및 단과대학 상임대의원회 업무와 권한은 자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학대회로 위임한다.)

부 칙

본 회의 회칙은 200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와 학생회 사업의 통례에 따른다.

본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전학대회에서 담당한다.

2000학년도 3,4학년은 각 해당 학과소속 학부에서 선거를 치른다.

2000학년도 문화관광학부는 언어문화학과와 함께 선거를 치른다.

2001학년도부터 단대, 학부, 야간총학생회 소속 동아리는 총 동아리연합회에 소속된다.

부 칙

단, 2004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 한하여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회의 회칙은 200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장 선거

제91조(선거) 본 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한다.

제92조(선거시기) 본 회의 선거는 회계연도 30일전까지 완료한다.

→본 회의 선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30일전까지 완료한다.

제9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학대회의 의장은 선거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학대회의 의장은 선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부 칙

본 회의 회칙은 2007년 6월 13일에 개정한다.

본 회의 회칙은 위에 명시된 항목을 제외하고 200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회의 회칙은 2008년 5월 28일에 개정한다.

본 회칙은 200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회의 회칙은 2015년 11월 16일에 개정한다.

본 회칙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회의 회칙은 2017년 12월 11일에 개정한다.

본 회칙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회의 회칙은 2018년 03월 14일에 개정한다.

제12장 감사 제64조(중앙감사위원회) 3항 중앙감사위원회의 구성은 회계연도의 1월 중에 중앙감사위원장이 구성하며, 감사위원 9인의 선임은 중운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 회칙은 2018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